

# 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## [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(1공구)]

□ 점검일시 : 2017.08.11 (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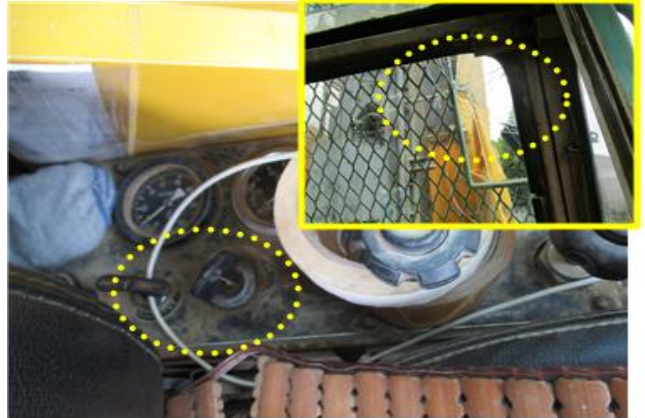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한종수,정달영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01정거장 항타기의 운전자가 이석하였음에도 열쇠가 꽂혀 있으니 열쇠를 분리보관하도록 교육 및 관리 요하고, 전면 유리가 파손되어 있으니 수선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01정거장 항타기 후면의 발전기가 고정단쪽에 빔당 볼트1개로 고정되어 있어 진동 등 불안정 상태에서 발전기의 전도재해 위험이 있으니 2개 이상 고정 요함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02E환기구의 가시설 터파기 장소에 임시뒹개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전도재해 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02E환기구의 경화제, 시멘트 등은 물질보건 안전자료(GHS-MSDS)를 게시하고 교육 관리 요함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4(위험물보관소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01 정거장 콤프레샤 후면의 유류 등은 위험물보관소에 분리보관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24(위험물보관소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02E환기구 및 103 정거장의 분전반은 수전 표시등의 설치 및 충전부 보호를 보완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16(분전반)



○ 보건 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2E환기구 교반장치에서 자재 투입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규정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교육 및 관리 요함.(현재 보안경 미착용)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3 정거장 굴착구간은 폭우에 대비하여 양수기를 설치하기 바람.
  - 매설물은 작업시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표시 및 용도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보완 요함.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1조(매설물 등 파손에 의한 위험방지)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1 정거장 CIP 콘크리트 타설 후 폐콘크리트 집수 처리시설이 미비하니 폐콘크리트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반출하여야 함.



○ 품질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3 정거장 임시 세륜시설로 고압살수기를 사용중이며 바닥면의 오수를 집수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 요함.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2E환기구 우측도로 아스팔트의 훼손이 심하여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아스팔트를 전면포장하거나 요철이 심한 곳을 부분 보수 요함.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2E환기구 교반장치의 작동중 기름과 물이 흘러 도로 외부로 유출중이니 장비작업 하부에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처리 요함.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101 정거장 콤프레샤 등 장비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시설로부터 의 민원에 대비하기 바람.

